##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6

발의연월일: 2024. 6. 14.

발 의 자: 박홍배·김성환·김한규

민병덕 • 한준호 • 정진욱

김준형 • 민형배 • 문대림

이수진 · 이연희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재해보상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어도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함.

이는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 공무상 재해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 규정이 존재하고, 지방의회의원도 현행법에 따라 공무상 재해보상에 대한 법적근거 규정이 존재하는 데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만 해당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이 법에 따른 보상의 대상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형평을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8조의2(상해·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lt;신 설&gt;</u>	제108조의2(상해・사망 등의 보
	<u>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u>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
	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
	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u>수 있다.</u>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한다.